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2007. 6. 8.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 8. 17. 교육감의 제출로 2007. 8. 21.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하고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 상장, 공로패,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에 따른 부상, 훈련지원금, 참가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교육감에게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와 육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나. 교육감에게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5조).
- 다.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에 따른 부상, 훈련지원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지역교육청 소속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1)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항 및 제2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 1.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3) 「공직선거법」

–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

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5. 검토의견

□ 제안배경 및 사유

- 현재도 관례적으로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표창 및 수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도화 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특히 매년 실시되는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선수에게 지급하는 교육감의 격려금이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만 본 조례에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면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4호에서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창과는 별도로 본 조례안 제6조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바꾸어 그 지원의 범위와 방식을 따로 규정하여 표창에 따른 부상의 개념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법령에 근거한다할지라도 지원액수의 자의적 증액은 선심성 기부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이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제한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가 될 것이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우수선수의 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임. 따라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표창의 남발 및 과도한 포상금의 지급 등의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이 기존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와 통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 조례는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체육보다 교육과 학예에 대한 표창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과 통합할 경우, 수정할 사항이 방대하고 전반적인 조례의 취지도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별도의 조례로 새로이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최초의 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우리의회에 제출된 안의 제4조와 제5조의 표창관련 사항과 제6조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연결되어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내용상 명백히 분리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수정 및 재검토 여지가 있는 문안

- 제8조 및 제9조의 '표창장'이라는 용어는 '표창'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8조(표창장 대상자의 추천)
 - ① 교육감 표창장은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
 - ② 표창장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이하 "표창 조례"라 한다) 별지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 제9조(공적심사)
 - ① 표창장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삭제된 제6조 제4항의 삽입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됨.
 - 제6조 제4항
 - ④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로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상기 항은 평소에 체육대회시 관례적으로 시행한 행사를 규정한 내용이나 교육위원회에서는 '위로행사'가 예산을 과다하게 소요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삭제하였음.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예산범위 내의 '위로행사'를 '격려행사'로 표기를 바꾸어 추가함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감 제출안 및 교육위원회 수정심의 확정안

교육감 제출안	교육위원회 수정 심의 확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표창제도 등을 마련하여 학교체육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선수”라 함은 체육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를 말한다. 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 3. “체육대회”라 함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4.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라 함은 별표에서 지정한 체육대회 중 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를 말한다.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선수”라 함은 체육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를 말한다. 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 3. “체육대회”라 함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4. 삭제
<p>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선수와 우수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선수와 우수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p>
<p>제4조(표창 등) ① 교육감 및 교육장 (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별표에 해당하는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창장 2. 상장 3. 공로패 4. 감사장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은 표창권자가 행한다.</p>	<p>제4조(표창 등) ① 교육감 (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별표에 해당하는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창장 2. 상장 3. 공로패 4. 감사장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은 표창권자가 행한다..</p>

교육감 제출안	교육위원회 수정 심의 확정안
<p>제5조(표창장 수여 등) ① 표창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3.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지도한 자 <p>② 표창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단,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p>③ 표창권자는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공로가 지대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p> <p>④ 표창권자는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p>	<p>제5조(표창장 수여 등) ① 표창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3. 삭제 <p>② 표창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단,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p>③ 표창권자는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공로가 지대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p> <p>④ 표창권자는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p>
<p>제6조(지원 등) ①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하여 참가선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로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6조(지원 등) ①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참가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p> <p>② 삭제</p> <p>③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삭제</p>
<p>제7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교육감 제출안	교육위원회 수정 심의 확정안
<p>제8조(표창장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장은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p> <p>② 교육장 표창장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p> <p>③ 표창장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이하 “표창 조례”라 한다) 별지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다.</p>	<p>제8조(표창장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장은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p> <p>② 삭제</p> <p>③ 표창장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이하 “표창 조례”라 한다) 별지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다.</p>
<p>제9조(공적심사) ① 표창장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조례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p>	<p>제9조(공적심사) ① 표창장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조례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p>
<p>제10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p>	<p>제10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p>
<p>제11조(표창대상 등) 표창장·상장·공로패·감사장·표창대장의 서식은 표창조례를 준용하고 표창권자는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p>	<p>제11조(표창대상 등) 표창장·상장·공로패·감사장·표창대장의 서식은 표창조례를 준용하고 표창권자는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의 표창권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p>	<p>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의 표창권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p>